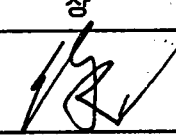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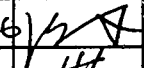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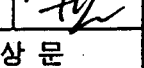


서울특별시

우100-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/ 전화 (02) 731-6767 / 전송 731-6369
 처리부서 : 도로관리과(시청본관 4층) 담당 하삼문

문서번호	도관58710-202	취급		시	장
시행일자	1996.10.22	보존	년		
(제 1안)		국 장	전 결		
수 신	내부결재	과 장		법무담당관심사필	
		계 장			
		기안	하 삼 문	협조	



제 목 오목교 차량통행제한 공고

1. 우리시 강건 58710-671호('96.9.30) 및 도관 58710-932호('96.10.9)와
 관련입니다.

2. 강서건설관리사업소장으로부터 양천구 목동 - 영등포 양평동간 안양천을
 횡단하는 오목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동교량의 구조 보전 및 효과적인
 차량통행제한을 위하여 동교량 목동 → 영등포 방향 외측 1차선을 승용차전용차선으로
 차량통행제한 공고 요청이 있어 도로법 제5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2 규정에 따라
 별첨 공고(안)과 같이 공고코자합니다.

첨부 차량통행제한 공고(안) 및 관련도면 각 1부.

(제 2안)

수신 공보담당관

제목 시보 게재 의뢰

1. 아래와 같이 시보게재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게재 구분 : 공고

나. 게재 건명 : 차량통행제한공고

다. 게재 내용 : 별첨

라. 법적 근거 : 도로법 제5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2

첨부 차량통행제한공고(안) 2부. 끝.

도 로 관 리 과 장

0072-1

7

(제 3 안)

수 신 수신처 참조

제 목 오목교 차량통행제한 공고 통보

1. 우리시 강건 58710-671호('96.9.30) 및 도관 58710-932호('96.10.9)와
관련입니다.

2. 강서건설관리사업소장으로부터 양천구 목동 - 영등포 양평동간 안양천을
횡단하는 오목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동교량의 구조 보전 및 효과적인
차량통행제한을 위하여 동교량 목동 → 영등포 방향 외측 1차선을 승용차전용차선으로
차량통행제한 요청이 있어 도로법 제5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2 규정에 따라 별첨
공고(안)과 같이 공고하였음을 통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

3.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는 유관기관(강서건설관리사업소, 서울지방경찰청등)
과 협의하여 단속시설 및 안내·규제표지판을 설치토록하고 단속방안을 강구, 시행에
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.

첨부 차량통행제한 공고(안) 1부. 끝.

서울특별시

수신처 교통운영과장, 건설안전관리본부장(도로관리부장, 총무부장), 강서건설관리
사업소장, 서구1-25(토목과장)

(제 4 안)

수 신 서울지방경찰청장

참 조 교통관리과장, 교통안전과장

제 목 오목교 차량통행제한 공고 통보

1. 우리시 도관 58710-932호('96.10.9)와 관련입니다.

2. 양천구 목동 - 영등포 양평동간 안양천을 횡단하는 오목교에 대한 정밀
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동교량의 구조 보전 및 효과적인 차량통행제한을 위하여 동교량
목동 → 영등포 방향 외측 1차선을 승용차전용차선으로 차량통행제한코자 도로법 제53조
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2 규정에 따라 별첨 공고(안)과 같이 공고하였음을 통보하오니
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교량(목동 → 영등포 방향) 진입로상에 규제표지판을
조속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첨부 차량통행제한 공고(안) 1부. 끝.

서울특별시

008 2-2

공 고 (안)

서울특별시공고 제 1996-41 호

차량통행제한공고

도로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차량통행제한하고자
같은법 제53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
합니다.

1996년 월 일

서울특별시장

도로의 종류	특별시도	시 설 명	오목교(목동 → 영등포 방향 외측 1차선)
제한의 대상	승용차 외 모든 차량 (승용차 전용)	구 간	동교량(해당차선) 전구간
기 간	1996년11월1일00:00부터 성능개선공사 완료시까지		
이 유	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, 동교량이 노후되어 내하력이 부족하므로 중차량을 통행제한함으로써 교량의 구조보전 및 차량 운행위험 방지		
문 의 처	서울특별시 도로국 도로관리과(전화:731-6766-8)		

<위 치 도>

생략 (서울시 도로국 도로관리과 비치도면과 같음)